

창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5042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환, 김수형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윤정주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2896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18,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2.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18,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H 직원들의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4대 보험료 18,522,870원이 미납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7. 11.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K건물 L호와 경남 고성군 M 지상 건물을 압류하였다. 또한 G 직원들의 2016. 8.경부터 2018. 3.경까지 4대 보험료 11,118,520원이 미납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 16.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3. 3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32,005,070원(= H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및 연체금 19,905,390원 + G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및 연체금 12,099,680원)을 납부하였다.

G는 2014. 6.경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와 사이에 창호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6. 12. 원고 소유의 밀양시 O 대 99㎡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N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8. 3. 30. N의 요청에 따라 미납 자재구입대금 62,513,02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소유의 경남 고성군 M 지상 건물 중 P호에 관하여, 피고는 Q에게 요청하여 2016. 8. 8. 원고 명의의 상동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R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받았다. 위 건물 중 S호에 관하여, 피고는 2016. 8. 11. 위 농협 계좌로 T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1,000,000원을 받았다. 피고는 위 각 금원을 G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3, 15호증의 1, 2, 16호증의 1, 2, 17호증의 1, 2, 18,

21, 22,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등 참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고가 G 등 직원들의 4대 보험료 합계 32,005,07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N가 원고에게 자재구입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미납 자재구입대금 62,513,026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6, 8, 20,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등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동울산세무서장은 제1심 법원에 ‘2019년 명의위장으로 원고에서 피고로 (G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하였다’, ‘2014년 1기, 2014년 2기,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허위등록가산세 고지하였으며,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사업자(피고)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② E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003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가 F 및 H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F 및

H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 9. 9.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72, 3005(병합), 3531(병합), 4219(병합)].

③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 G 등의 계좌로 합계 360,000,000원이 넘는 금원을 이체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송금은 원고와 피고의 내연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무렵에도 지속되었다.

④ G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C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F, G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대부분 피고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고, F, G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J은 피고의 지시를 받고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⑤ 원고는 G를 운영하면서 2014년 2기와 2015년 1기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년 2기와 2015년 1기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창원지방법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위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선고한 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창호업체인 G를 개업할 만한 자력이나 이를 운영할 사업상의 수단이나 경험이 없었고, 피고가 운영하는 C 명의로 G의 공장을 임차하여 왔으며, C이 F 공장의 차임이나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는 2016. 10. G에 근무하고 있던 I에게 “내이름 쓰지마 나 그회사 사장아니야”, “너거한테 월급주는 B님에게 말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이처럼 원고는 G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의 4대 보험료 및 자재구입대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원고가 실제로 피고의 4대 보험료 및 자재구입대금을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94,518,096원(= 32,005,070원 + 62,513,0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8.경 R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과 T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1,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상동농협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G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1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합계 110,518,096원(= 94,518,096원 +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상금 지급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이전에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득 관, 판사 윤 정, 판사 이큰가람